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6일 02시 08분



# 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주차차량과	3
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·등록이전 신고	3

##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·등록이전 신고

2017.07.04      조회수 244    등록자 이상엽  
10:40

- ✓ 민원사무명
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·등록이전 신고

---

- ✓ 민원내용
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·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

---

- ✓ 관계법령

 건설기계관리법 ( 제5조 )  
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( 제5조 )( 제6조 )  
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( 제7조및[별지8] )

---

- ✓ 구비서류

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
 -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
 -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
 -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
  
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
 -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 
 -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(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  
 -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(영업용일 경우만 해당)  
 영업용으로 이전시  
 - 위 서류 포함 대여업체임대차계약서 or 사업자등록증 or 소유자 대여업등록증

---

- ✓ 처리부서
주차차량과

---

- ✓ 협의부서

---

- ✓ 접수

---

- ✓ 수수료
1,000원

---

- ✓ 처리기간
즉시

---

- ✓ 기타사항

---

- ✓ 흐름도

---

- ✓ 기타참고사항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KB) ↓

미리보기



[별지 제8호의2서식] 건설기계 양도증명서(당사자 거래용).hwp (1505 hit/ 16.0

KB) ↓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(재발급)

다음글

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